

세계 그린뱅크 현황 및 시사점

백 응 조(미래전략개발부, woongjo_baek@kdb.co.kr)

황 현 정(미래전략개발부, hhj03@kdb.co.kr)

이 대 원(미래전략개발부, daewon.lee@kdb.co.kr)

2015년말 프랑스 파리에서 2020년 이후의 신기후변화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인 파리협약이 채택됨에 따라 기후금융 분야에서도 국제적인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국제적인 합의가 개별국가 중심의 정책으로 구체화되면서, 기후금융을 위한 자원마련의 일환으로 국가별로 그린뱅크를 설립하거나, 설립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린뱅크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과 세계 그린뱅크 설립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그린뱅크 도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그린뱅크는 기후변화 및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금융을 전담하는 공공 또는 준공공 금융기관이다.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중개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투자를 유인하고 투자위험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주로 신용보강, 공동투자, Warehousing의 금융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그린뱅크는 영국, 일본, 말레이시아, 스위스, 호주 등에는 중앙정부 주도로 설립되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주요 6개 주와 1개 군에 설립되어 있다. 정책금융기관이 없는 국가에 주로 설립된 것이 특징이다. 설립 형태는 기존 공공기관의 활용 정도에 따라 기존 기관 내 부서 신설, 기존 기관 전환, 그린뱅크 신설의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사업 유형은 중점 지원분야가 대규모 사업 또는 소규모 분산형 사업인지에 따라 도매형, 소매형, 혼합형으로 분류 가능하다.

향후 국내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기후금융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후금융시장의 특성상 초기 민간자본 투입에는 한계가 있어 그린뱅크와 같은 공공금융기관이 혁신적인 방식으로 공공자금을 지원하고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해 ① 정책금융기관 내 기후금융 전담조직 신설, ② 공공기관과 민간금융기관 공동으로 펀드 신설, ③ 그린뱅크 신설의 세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그린뱅크 설립에 앞서 ①, ②를 통해 기후금융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을 축적한 후, 여건이 성숙되면 ③으로 확대개편하는 것이 실행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연구 배경

2015년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¹⁾ 당사국 총회(COP21)²⁾에서 2020년 이후의 신기후변화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인 파리협약(Paris Agreement)³⁾이 채택되었다. 2016년 11월 동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2021년부터는 기존의 교토의정서를 대체한 신기후체제가 적용된다. 신기후체제 하에서는 37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발생되던 기존의 교토체제와 달리, 197개⁴⁾ 모든 당사국에 감축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기후 분야에서의 이러한 국제적인 진전은 개별국가 중심의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국가별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소요되는 자원 확보의 일환으로 기후금융에 특화된 금융기관인 그린뱅크를 설립하거나, 설립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 정부도 2015년 6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⁵⁾ 대비 37%의 감축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는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후금융 시장 및 투자여건 조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아울러 기후금융에 특화된 기관도 설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린뱅크의 기본 개념 및 역할, 금융기법 등을 살펴보고 세계 그린뱅크 설립 현황을 조사하여 국내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및 그린뱅크 도입방안을 모색해보았다.

그린뱅크 개요

1. 정의

OECD, Coalition for Green Capital(CGC) 등에서 내린 정의⁶⁾⁷⁾를 종합하면, 그

1)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 Conference of the Parties 21

3)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12.12일 맺어진 국제협약으로 산업화 이전 시기 대비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폭을 2°C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 목표

4) 197개 당사국 중 하나인 미국의 경우 2017.6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협약 탈퇴를 선언하고 8월 유엔에 탈퇴의사를 공식 통보하였으나, 공식적인 탈퇴 절차는 협약 발효 3년 후인 2019.11월 이후에나 가능

5) BAU(Business as Usual),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의 배출량 전망치

6) OECD(2017)는 “다양한 활동 및 개입을 통해 저탄소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프라에 국내 민간자본 투자를 활성화

린뱅크는 “기후변화 및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금융을 전담하는 공공 또는 준공공 금융기관”이라 할 수 있다. 공공자금을 활용하여 민간자본 유인을 최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투자대상으로 하며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린뱅크는 주로 녹색금융 또는 기후금융을 수행한다. 녹색금융은 자원 및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하여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이다. 기후금융은 녹색금융보다 범주가 다소 좁은 개념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변화 적응에 대응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는 금융활동이다. 녹색금융 또는 기후금융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지속가능금융, 환경금융, 탄소금융 등이 있다.⁸⁾

2. 역할 및 운영원칙

그린뱅크는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중개하고 동시에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투자를 유인하고 투자위험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선 그린뱅크는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한 인내자본⁹⁾을 공급한다.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는 투자이력 부족으로 투자비용이 높은 측면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린뱅크는 신규 분야 및 기술 투자에 대한 퍼스트무버로서 인내자본을 공급한다. Kennan(2014)에 따르면, 그린뱅크는 <그림 1>과 같이 청정에너지 기술이 적용 초기 단계를 벗어나 시장에서 상업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¹⁰⁾

둘째, 금융상품 구조화 및 시장 표준화를 통해 자본비용을 낮추고 민간부문의 투자가 용이해질 수 있도록 돕는다. 구조화 방식으로는 유동화, 신디케이션, 리파이낸싱 등의 수단을 활용하며, 시장 표준화를 위해 공통된 법률기준을 수립하고 표준화된 대출상품을 취급한다.

셋째, 레버리지 비율을 높이고 추가적인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보증상품

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라 정의

7) CGC(2017)는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상업화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기타 청정에너지 및 녹색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공공, 준공공, 또는 비영리기관”이라 정의

8) 조승현(2013), “기후금융 전문기관 설립에 관한 연구”, 인천경제발전연구원

9) 인내자본(Patient Capital)은 장기자본과 유사한 개념으로 높은 투자 불확실성 및 장기간의 자금회수기간을 감내하며 투자되는 자본을 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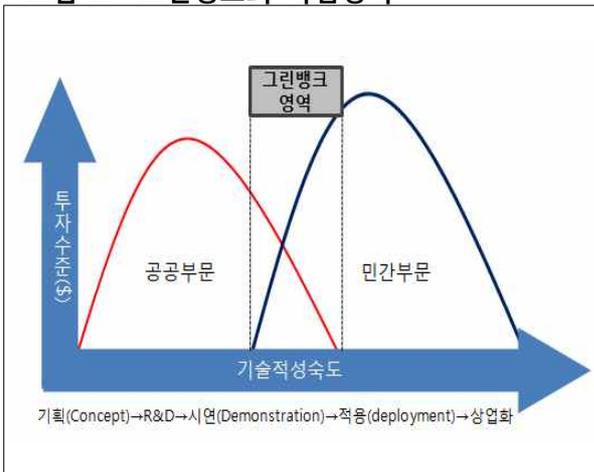
10) Hallie Kennan(January 2014), “State Green Banks for Clean Energy”, Energy Innovation, Working Paper

및 리스크헤지 상품을 제공하거나 대출손실보전금을 부담하기도 한다. 특히 소재국의 지역 프로젝트 및 시장 상황에 친숙한 점을 이용하여 환리스크 및 정치적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해외투자자들을 유인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청정에너지 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정부 및 정책입안자에게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하도록 제안하며, 이를 통해 규제리스크를 완화하는 역할도 한다.

한편, 그린뱅크는 다양한 국가에 각기 다른 이름으로 설립되어 있으나, <표 1>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기후금융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민간투자 최대 유치, 시장에 기반한 금융활동 수행, 독자생존, 독립성 및 보완성 추구 등 기관별 핵심적인 운영원칙은 동일하다.

<그림 1> 그린뱅크의 사업영역



자료 : Hallie Kennan(January 2014)

<표 1> 그린뱅크의 핵심 운영원칙

운영원칙	
1	기후금융분야에 집중 투자 (Focused Institution)
2	그린뱅크 투자금 대비 민간투자 최대 유치 (Leverage Private Capital)
3	양허성자금 제공보다는 시장에 기반 (Market-oriented and Flexible)
4	운영비를 감내할 수 있는 투자수익 거양을 통해 독자적 생존 추구 (Self-sustaining)
5	독립적, 시장 기반의 투자, 운영 매커니즘 (Independence)
6	기존 정부정책 보완 목적이며 시장참여자들과의 경쟁을 지양 (Complementary)

자료 : Coalition for Green Capital(2017), "National Green Banks in Developing Countries"

3. 자금조달

그린뱅크는 정부로부터 직접 자본금을 지원받는 경우도 있으나, 다양한 방식으로 초기 자본금 및 추가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현재 설립된 그린뱅크들은 자산매각, 탄소배출권 거래, 추가 공과금 부과, 차입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이외에 그린본드 발행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표 2> 그린뱅크의 자금조달 방식

방식	설명 또는 사례
자산매각 (Asset Sales)	영국 Green Investment Bank는 초기 자본금의 2/3를 정부의 자산(고속철도 운영권) 매각 자금으로부터 지원받음
배출권 거래 (Emissions Trading Scheme)	New York Green Bank는 지역 온실가스 계획(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에 따른 탄소배출권 경매 자금으로 52.9백만달러를 조달했으며, Connecticut Green Bank도 동 자금으로부터 매년 5~10백만달러를 지원받음
추가세금 부과 (Utility Bill Surcharges)	뉴욕주는 모든 유틸리티 고객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여, 일부 자금을 New York Green Bank의 초기 자본금에 투입
차입 (Loans)	Connecticut Green Bank는 특수목적기구(SPEs)를 활용하여 자본을 레버리지하여 차입
벌금 징수 (RPS or EERS)	전기공급회사들이 RPS ¹⁾ 나 EERS ²⁾ 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여 정부 수익으로 수취, New York Green Bank의 초기 자본금에 일부 활용
그린본드 발행 (Green Bond Issuance)	친환경 사업을 지원하는 특수목적의 고정수익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형태로, 그린뱅크 발행 채권은 모두 그린본드라 할 수 있음

주 : 1)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RPS)는 전기공급회사들이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일정비율의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정책임

2)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EERS)는 에너지효율성 절감 목표를 세우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보완하도록 설계된 정책임

자료 : OECD(May 2014), "Lessons from Established and Emerging Green Investment Bank Models"를 참고하여 작성

4. 주요 금융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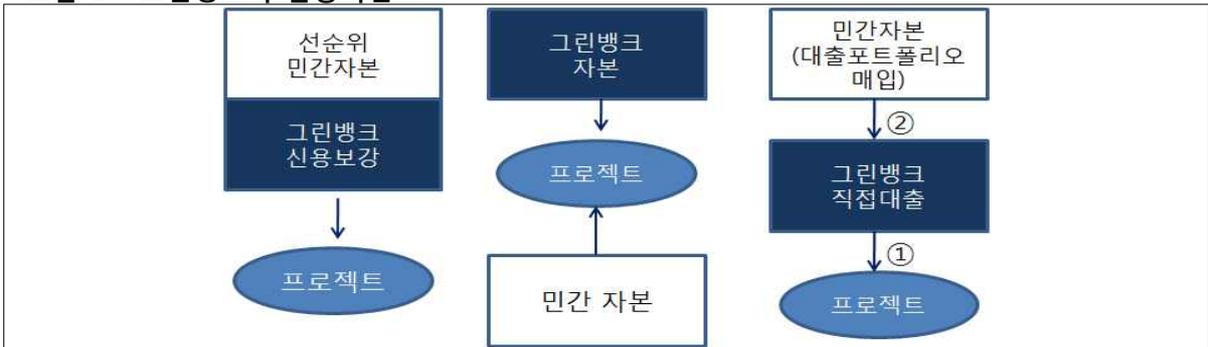
그린뱅크는 유치하고자 하는 민간자본의 성격 및 운영원칙 등에 따라 다양한 금융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그린뱅크가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활용하는 주요 금융방식으로는 신용보강, 공동투자, Warehousing이 대표적이다.

첫째, 민간투자자의 투자위험을 완화하고 투자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출손실보전금 부담, 부분보증, 후순위채 인수 등의 다양한 신용보강 매커니즘을 활용한다. 둘째,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 투자, 지분 인수 등 다양한 민간투자 방식과 결합하여 민간부문과 공동투자한다. 셋째, 소규모 또는 지역적으로 분산된 프로젝트의 경우 그린뱅크가 직접 대출을 실행하고 여러 개의 대출채권을 통합(pooling)하여 민간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유동화하는 Warehousing 방식을 활용한다. 기타 금융방식으로는 PACE(Property Assessed Clean Energy) 파이낸싱¹¹⁾과 On-bill 파이낸싱¹²⁾ 등이 있다.

11) 부동산 소유주들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지자체, 주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해주고 이를 재산세 추가 납입을 통해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2) 소비자가 공과금(Utility Bill) 납부를 통해 에너지 업그레이드 대출을 상환하도록 하는 금융구조로, PACE에서와 마찬가지로 공과금은 역사적으로 상환비율이 매우 높아 원리금 회수의 안정성이 높음

<그림 2> 그린뱅크의 금융기법



자료 : Coalition for Green Capital(2017)을 참고하여 재구성

세계 그린뱅크 현황

1. 개관

그린뱅크는 영국, 일본, 말레이시아, 스위스, 호주 등에는 중앙정부 주도로 설립되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주요 6개 주와 1개 군(County)에 설립되어 있다. 국가개발은행이나 국내 그린인프라에 적극적인 민간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국가에 주로 설립된 것이 특징이다. 국가개발은행이 있는 국가의 경우 독일 KfW와 같이 기존 기능에 친환경분야 투자 기능을 추가하여 기후금융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림 3> 세계 주요 그린뱅크



자료 : OECD(2015), "Green Investment Banks, Policy Perspectives"

2. 설립 형태 및 사업 유형

(1) 설립 형태

그린뱅크는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노력 정도, 탄소절감 규모, 절감목표 달성 시기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설립되며, 기존 공공기관의 활용 정도에 따라 크게 세 가지 형태(① 기존 기관 내 부서 신설, ② 기존 기관 전환, ③ 그린뱅크 신설)로 분류가 가능하다.

<표 3> 그린뱅크의 설립 형태

구분	① 기존 기관 내 부서 신설	② 기존 기관 전환	③ 그린뱅크 신설
기존 기관의 활용 정도	●	◐	◑
설립 자원	공공자원	공공자원	공공자원(+민간자원)
설립 비용 규모 (자금, 시간, 인력 등)	◑	◐	●

자료 : NRDC('17.6), "National Development Banks and Green Investment Banks"를 참고하여 재구성

첫째, 정책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내 기후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거나 지원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 기존 기관 내에 조직을 신설하는 경우 정책금융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을 이행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기존 고객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금수요자에게 국제기구, 기후펀드 등 해외 기후금융 재원을 직접 중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기후금융 사업이 기존의 주요 사업들에 비해 중요도가 낮게 취급될 수 있으며, 투자위험이 높은 특성상 해당 기관이 유동성 및 리스크 관리에 추가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정책금융기관인 독일 KfW와 프랑스 CDC 등이 기관 내 기후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14년 설립된 New York Green Bank는 뉴욕 에너지연구개발국(NYSERDA)¹³⁾의 한 부문으로 설립되었다.

둘째, 기존 정책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그린뱅크로 전환하기도 한다. 이 경우 기존 기관의 고객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동시에 기후금융 전담기관을 새롭게 신설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기관 전환에 따른 사업 공백을 방지하기

13) 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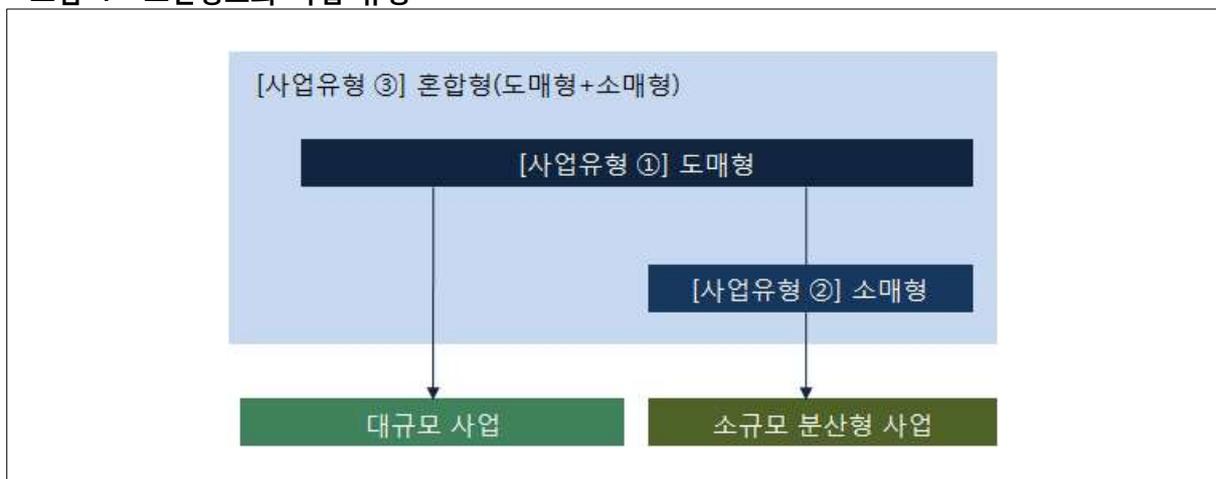
위해서는 그린뱅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전환 대상으로 선별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행정적 비용 및 기간이 소요되는 것도 단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로드아일랜드 주에서 수십년간 지역 수자원 프로젝트를 수행해오던 Rhode Island Clean Water Finance Agency가 2015년 그린뱅크인 Rhode Island Infrastructure Bank로 전환된 바 있다. 미국 최초의 그린뱅크인 Connecticut Green Bank도 Connecticut Green Fund가 2011년 은행으로 전환된 예이다. 한편 인도에서는 신재생에너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Indian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gency를 그린뱅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셋째, 기후금융 업무 수행을 위해 완전히 독립적이고 분명한 미션과 권한을 가진 새로운 기관이 설립되는 경우가 있다. 설립 재원은 보통 정부가 출자하며, 정책 목적에 부응하는 맞춤형 조직 설계 및 운영, 국내 수요에 부합하는 유연한 금융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정책금융기관과 업무가 중복될 수 있으며, 법적·행정적 설립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신규로 설립된 대표적인 그린뱅크로는 영국의 Green Investment Bank와 호주의 Clean Energy Finance Corp. 등이 있다.

(2) 사업 유형

사업 유형은 중점 지원분야가 대규모 사업 또는 소규모 분산형 사업인지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① 도매형, ② 소매형, ③ 혼합형)으로 분류된다.

<그림 4> 그린뱅크의 사업 유형



자료 : Coalition for Green Capital('17.7), "National Green Banks in Developing Countries"를 참고하여 재구성

첫째, 도매형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립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거나 소매금융기관 또는 중개기관을 통해 온렌딩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유형이다. 그린뱅크가 대규모 고위험 프로젝트에 앵커투자자 역할을 하여 민간자본 유치를 확대하고, 온렌딩 방식으로 민간금융기관의 점포를 활용, 소규모 민간 프로젝트에 효율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위험이 크고 원금 회수기간이 길어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온렌딩 방식의 경우 중개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금이 공급되는 특성상 적극적인 자금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도매형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는 영국의 Green Investment Bank, 미국의 New York Green Bank, 호주의 Clean Energy Finance Corp. 등이 있다.

둘째, 소매형 그린뱅크는 소규모 프로젝트나 개인고객에게 직접 자금을 공급한다. 지역, 지원 대상, 지원 목적 등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설계가 가능하며, 소규모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함에 따라 위험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적합한 사업 유형이며, 민간금융기관과 업무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소매형 그린뱅크는 미국의 Hawaii Green Infrastructure Authority로 동 기관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태양광을 보급하기 위해 리스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혼합형은 도매형과 소매형 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사업 유형이다. 한 기관에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직접적, 일괄적으로 수행되어 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다양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대규모의 인력 및 비용이 필요하며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미국의 Connecticut Green Bank와 독일의 KfW 등이 기후금융과 관련하여 도소매 금융을 모두 취급하고 있다.

<표 4> 주요 그린뱅크 설립현황

은행명	국적	설립연도	설립형태	주요 사업 및 특징
Connecticut Green Bank	미국	'11	기존 청정에너지 펀드를 준공공기관으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양광 설비 리스, 거주용 태양광 투자 프로그램, PACE 프로그램 등 도소매 금융을 모두 취급
New York Green Bank	미국	'14	NYSERDA의 부문으로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건설금융, 기한부용자, Warehousing 제공 소비자 직접대출을 하지 않는 도매금융 중심 기관
Green Investment Bank	영국	'12	영국정부가 100% 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적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 M&A 서비스 등 제공, 그린뱅크 설립 자문 '17년 맥쿼리가 인수, 향후 금융서비스 다변화 및 조달방식 변화가 예상됨
Clean Energy Finance Corp.	호주	'12	정부기관으로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정에너지 기술 및 호주 국내 프로젝트에만 투자 가능 투자 의사 결정시 상업적 이익 및 투자 매력도에 대하여 철저히 평가
Green Finance Organization	일본	'13	일본 환경성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세¹⁾로 자금을 조달 탄소배출 저감 프로젝트에 지분 또는 메자닌 투자
KfW ²⁾	독일	'48	독일 연방정부 80% 주정부 20% 지분 보유한 정책금융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보호, 에너지효율성,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발전 프로그램 등 제공 '14년부터 고유의 그린본드 발행 프로그램인 'Green Bond-Made by KfW' 시행

주 : 1) 일본은 '12.10월 탄소세(Climate Change Mitigation Tax)를 도입, 기존 석유석탄세에 증세하는 방식으로 화석연료 탄소배출량에 대하여 CO₂ 톤당 탄소세를 징수 중
 2) 다방면의 사업을 영위하는 특성상 그린뱅크로 분류할 수 없으나, 다양한 환경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 중으로 다른 그린뱅크와의 비교를 위하여 포함
 자료 : 각 사 홈페이지, Annual Report 등 참고

시사점 및 국내 도입방안

향후 국내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기후금융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¹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10년 누적(2021~2030년) 기준으로 추가 재정소요가 약 31.2조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관측되는 공공 기후금융의 유인성¹⁵⁾ 수준까지 민간금융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할 경우, 필요한 재정소요는 약 5.2조원이다.¹⁶⁾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초과하는 정책을 추구하거나 국내기업이 해외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수주에 적극 나서는 경우, 기후금융 수요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14) BAU 대비 37% 감축

15) 공공금융 공급으로 민간금융이 유발되는 정도로서 평균적으로 약 5배 수준

16) 진인, 김윤희(2016.11), “공공 기후금융 정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후금융시장의 특성상 초기 민간자본 투입에는 한계가 있어 그린뱅크와 같은 공공금융기관이 혁신적인 방식으로 공공자금을 지원하고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도 기후금융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내 지형적 특성, 탄소기반 전력대비 청정에너지의 경쟁력, 시장 수요, 관련 법·제도 등에 대하여 폭넓은 이해를 하고 있는 기관이 설립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 그린뱅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① 정책금융기관 내 기후금융 전담조직 신설, ② 공공기관과 민간금융기관 공동으로 펀드 신설, ③ 그린뱅크 신설이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은 <표 5>와 같다. 향후 기후금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내 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업무 수행능력 및 참여 가능성은 아직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그린뱅크 신설에 앞서 ①, ②를 통해 기후금융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을 축적한 후, 여건이 성숙되면 ③으로 확대개편하는 것이 실행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표 5> 국내 도입방안별 장단점

방안	장점	단점
① 정책금융기관내 기후금융 전담조직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조직 활용으로 신규설립에 따른 비용 및 시간 절약 ■ 기존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금융상품·서비스, 자금조달원, 고객 네트워크 등 활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수행업무 대비 기후금융의 중요도가 낮게 취급될 가능성 ■ 리스크 및 유동성 관리에 추가적으로 대비할 필요
② 공공기관과 민간 금융기관 공동으로 펀드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의 연계·협력이 상대적으로 원활하며, 민간투자 확장성 보유 ■ 독립기관 신설에 비해 절차 등이 간편하며 비용 및 시간 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금융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로 민간투자 유인에 장기간 소요 가능 ■ 펀드 규모에 따라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에 한계 존재
③ 그린뱅크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목적 및 국내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기관으로 설립 가능 ■ 기후금융 특화기관으로서 전문성 및 독립성 도모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정비, 행정절차 등에 장기간 소요 ■ 단기적으로는 기존 정책금융기관과의 업무중복 문제 존재